

대구지방법원 2022. 11. 23 선고 2022나31201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단체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

담당변호사 최종혁, 조영태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정

변 론 종 결 2022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3.

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. 4. 27. 선고 2021가소23408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201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2022. 11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801,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1. 1.부터 이 사건

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 소유의 (차량번호 1 생략) 영업용 개인택시(이하 위 C 및 위 개인택시를 합하여 '원고차량'이라 한다)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C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피고는 (차량번호 2 생략) 승용차(이하 운전자 및 위 승용차를 통칭하여 '피고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원고차량이 2021. 5. 4. 09: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앞 대곡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(직진, 좌회전 차로)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E식당 앞 사거리(이하 '이 사건 교차로'라 한다) 직전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원고차량 앞쪽에서 진행중이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진행방향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고차량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좌측 앞 휠더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뒷 도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가 피고차량의 수리비 15,505,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 7,752,5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,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,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F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다.

라. F위원회에서는 '편도 2차로 도로 중 직진, 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유턴행태로 회전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점, 방향지시등을 늦게 켜 점, 빗길이라 피양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원고차량의 속도가 다소 빠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차량의 과실 30%, 피고차량의 과실 70%'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을 4,651,000원으로 결정하였다.

마. 원고는 2021. 10. 29. 피고에게 심의위원회 결정금 4,651,500원과 자기부담금(500,000원) 중 원고차량 과실 상당액인 150,000원을 합한 4,801,500원을 지급하였다. [인정증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 이 사건에서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,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.

- 1)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도로는 편도 2차로로서, 1차로는 좌회전(비보호) 및 직진 전용이고, 2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 전용이다.
 - 2) 이 사건 교차로는 원, 피고차량 주행도로인 대곡로 양방향으로 편도 2차로와 좌,우 방면 1차로가 교차하고, 대곡로 양방향으로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, 사거리 모두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어린이보호구역해제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.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중앙선이 연장된 좌회전 유도선만 그려져 있을 뿐,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좌회전 유도선은 그려져 있지 않다.
 - 3) 원, 피고차량 주행방면 도로선형은 이 사건 교차로를 기점으로 전방 좌대각으로 기울어진 도로이다.
 - 4)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다.
 - 5) 원고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함이 없이 시속 4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.
 - 6)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직진, 우회전차로인 2차로에서 원고차량을 선행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 내지 유턴을 시도하면서 (피고차량은 좌회전 내지 유턴을 시도함과 거의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다) 원고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.
- 나.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이 사건 교차로 진입전 직진,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 내지 유턴을 시도하면서 원고차량

쪽으로 진입한 피고차량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. 다만 이 사건 교차로 내에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중앙선이 연장된 좌회전 유도선만 그려져 있을 뿐,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좌회전 유도선은 그려져 있지 않은 점, 원, 피고차량 주행방면 도로선형은 이 사건 교차로를 기점으로 전방 좌대각으로 기울어진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그 진행 방향을 좌측 안쪽으로 바꿀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, 특히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선 및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,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차량에게도 조금의 과실은 있다고 할 것이다.

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,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은 10 : 90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다. 위 과실비율에 의하면, 원고는 피고차량 소유자를 대위하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,600,500원{=(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5,505,000원 + 자기부담금 500,000원) × 원고차량 과실 비율 10%}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금원을 초과하는 4,801,5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3,201,00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,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.

라.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인 3,201,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. 11. 1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22. 11. 23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

명하며,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서영애, 판사 김형태, 판사 박치봉